

검 토 의 건 서

귀 협회의 2016. 3. 30.자 “통합체육회 가맹을 위한 통합절차”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사무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안 및 질의 요지

가. 사안의 개요

귀 협회가 제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전문경기단체인 구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생활체육단체인 구 국민생활체육회는 “통합체육회”로 통합되었다.
- 위 통합체육회로의 통합에 즈음하여 양 단체 소속 개별 경기종목별 단체들은 각자 해산 및 통합절차를 이행하였는바, 귀 협회가 소속되어 있던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(이하 항공회로 부름)에는 다 수의 종목별 단체가 산하단체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“일종목 일단체”의 조건을 준수할 수 없어 부득이 귀 협회는 항공회로부터의 탈퇴 절차를 밟았고 이에 대하여 항공회는 정관에 따라 탈퇴를 승인하였다.
- 귀 협회 및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(이하에서 연합회로 부름)는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양 단체의 해산 및 통합방법, 통합시기, 통합후의 집행부 및 대의기구 구성등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으며, 귀 협회는 위 합의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자발적으로 해산 총회까지 완료하였다.
- 최근 연합회는 종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독으로 통합체육회가 가맹절차를 밟을 의사를 표하였다.

나. 귀 협회의 질의요지

귀 협회의 질의 요지는,

- 연합회의 최근 행동이 적법한지, 위법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,
- 연합회의 최근 행동에 대응할 적절한 법률상의 조치는 무엇인지
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개진하여 달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하에서 일반적인 검토의견을 개진한 후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
습니다.

2. 일반적 검토의견

가. 통합의 주체에 관하여

구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병존하고 있었으므로
양 단체의 각 산하단체 혹은 가맹단체들이 통합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
할 것이며, 통합자격을 가진 단체사이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
는 통합 체육회의 가맹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가
맹자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.

한편 귀 협회는 직접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로 존속한 것은 아니고 항공
회의 산하단체로 존속하고 있었는바, 이는 귀 협회가 단체로서의 독자성
(혹은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경기 종목의 독자성)이 미흡하였기 때
문이 아니라 국제항공기구가 일국일체제만을 인정한 결과 우리나라뿐 아
니라 전세계가 국가항공회(NAC) 체제를 유지한 결과일 뿐입니다.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귀 협회 및 항공회가 “일종목 일단체” 조건을 충족
하기 위하여 탈퇴절차까지 완료하였으므로 귀 협회의 가맹자격 및 통합
의 주체성은 명백히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.

결론적으로 패러글라이딩 및 행글라이딩 경기종목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는 전문경기단체로서의 귀 협회와 생활체육단체로서의 연합회임이 분명합니다.

나. 귀 협회의 전문경기 단체성

- (1) 구 대한체육회에 관하여 귀 협회는 가맹단체가 아니며 항공회가 준가맹 단체 혹은 인정단체로 존속하여 왔습니다.

귀 협회가 직접 가맹 혹은 인정단체로 존속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, 귀 협회가 독자성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항공연맹(FAI)이 일국일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국가항공회(NAC)가 단일단체로 존속하여 왔던 결과일 뿐입니다.



구체적으로 귀 협회가 계속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지 여부를 통하여 귀 협회의 단체성 인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며, 구 대한체육회의 가맹주체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
- (2) 제반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, 귀 협회는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, 에어올림픽, 유러피언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등의 대륙경기, 아시아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아시안게임등에 관하여 국가대표의 선발 및 훈련, 현장대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수반하는 제반 교육 및 자격검증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.(특히 아시안게임의 경우 대한체육회는 귀 협회를 상대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귀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지도감독사항을 완수하고 이를 사후보고하는등 가맹단체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)

따라서 귀 협회는 귀 협회의 발족목적 및 정관에서 명기한 사항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협회의 존속목적에서는 물론이고 수십년간 수행한 업무내용등을 통하여 보아도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경기종목의 유일무이한 전문경기단체임은 명확히 확인됩니다.

따라서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종목에 관하여 법정 단체인 통합체육회 가맹단체가 형성된다면 통합의 주체로서 전문경기단체인 귀 협회가, 생활체육단체로서는 연합회가 각 유일무이한 적격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, 양 단체중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통합단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.

- (3) 한편 귀 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연합회는 귀 협회가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종목을 겸하고 있으므로 단일종목 단체가 아니어서 통합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, 이는 법리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.

국제항공연맹의 스포츠종목 분류에 의하면 패러글라이딩은 행글라이딩의 한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행글라이딩은 패러글라이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, 이는 빙상이라는 단일 종목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스피드스케이팅, 쇼트트랙스케이팅, 피겨스케이팅등이 포함되는 것과 동일한 계층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- (4) 결론적으로, 귀 협회는 단체의 목적 및 정관내용, 실제로 수십년간 수행한 국가대표 선발 및 파견업무의 수행, 국제항공연맹은 물론 구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준수내역등을 통하여 보건대 유일한 해당종목 경기단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현실적으로 구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라는 양 단체에 관련된 종목별 단체들을 통합체육회 산하단체 내지 가맹단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양 단체의 기존 소속 단체들임을 전제로 하지만 한편 그보다도 더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종목의 전문경기단체와 생활체육단체의 통합이며,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종목의 전문경기단체는 귀 협회 이외에 다른 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

다. 통합절차 준수 및 통합합의의 법적 효력

- (1) 귀 협회 및 연합회의 공적문서뿐 아니라 통합체육회 기획단,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반 공문 및 지침등을 종합하면 종전 통합 협상은 귀 협회 및 연합회의 자의적 판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 및 기획단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더불어 귀 협회는 주무관청 및 기획단의 지도감독을 모두 수행하였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지도내용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기한내 수행하고 완료하였습니다.

- (2) 구체적인 통합준비절차에 관하여 귀 협회 및 연합회는 회장 및 부회장등 대표자들이 직접 협의를 통하여 제반 사항을 결정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.

만일 귀 협회 및 연합회 구성원중 자격없는 일부가 대표권을 취득함이 없이 자의적으로 통합협의를 진행하였다면 그 협의를 통한 합의사항이 귀 협회 및 연합회에 구속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, 이 건의 경우에는 양 단체장 및 그 수임대표들이 수 차 회의를 거쳐 통합관련 주요사항을 합의문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공개하였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.

양 단체의 통합관련 합의는 양 단체를 구속하며, 양 단체는 합의문에 명기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, 합의문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게되는 것입니다.

- (3) 귀 협회 및 연합회가 단체로서 등기를 필한 법인인지, 아니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으나, 법인격 취득여부는 이 사안에서는 별다른 중요요소가 아닙니다.

민법상 사단법인에 관련된 의사결정 및 그 이행 관련 규정은 법인격없는 사단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, 이 합의 및 파기에 관하여 귀 협회 및 연합회가 등기를 필한 법인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그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.

3. 개별적 검토의견

가. 최근 연합회 행동의 위법성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법의 준수 및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는

방법으로 수행한 통합준비행위는 적법하고도 합당한 것이며,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위법 부당한 행동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.

구체적으로,

-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,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서 위법하며,
-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위반하는 행동으로서 위법하며,
- 귀 협회 및 연합회라는 단체 대 단체로서의 합의내용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명백히 위법합니다.

나. 대응 방법에 관하여

(1) 행정적인 대응방법에 관하여

최우선적으로 통합체육회 및 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, 만일 주무관청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즉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맹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.



(2) 단체분쟁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귀 협회와 연합회는 각 대표자등 대표기관이 공개적으로 국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합의는 양 단체를 구속하며 그 이행을 강제할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이에 만일 연합회가 통합절차를 무시하고 독자 가입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전제로서의 각종 결의, 대표기관의 업무수행행위는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.

이에 귀 협회는 연합회의 통합합의에 반하는 업무수행의 위법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그 전제로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(3) 형사적 대응

만일 연합회가 통합가맹에 관한 진정한 의사없이 귀 협회를 경쟁단체로 보아 항공회 탈퇴 및 자진해산등을 유도하여 무력화시킨 의도라고 볼 여

지가 있다면 이는 형법상 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”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최근까지의 통합합의 및 그 반복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다. 권고사항

우선적으로 주무관청 및 통합체육회에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연합회의 위법부당행위를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더불어 연합회에 대하여 정식 공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번복한 경위 및 그 이유 내지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답변에 따라 앞에서 본 민사절차 및 형사절차를 진행할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이상과 같이 우리 사무소의 검토 의견을 개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4. 4.

법무법인 민우



담당변호사 김정범, 정찬수, 나성태, 김다섭, 문홍수



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귀중